

● 2026-01-20 ●

율촌 입법 위클리

Yulchon Weekly Legislation Report

2026-01호 (2026년 1월 20일)

2026년, 기업들이 직면한 입법·정책 환경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 재편,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규제, 개인정보보호와 금융 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례 없는 책임 강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동관계의 재정립 등은 모두 제도 변화를 넘어 기업 경영의 본질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국면에서 율촌 입법위클리를 다시 시작하면서 2026년 핵심 입법·정책 이슈 10선을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기업의 경영·투자·컴플라이언스 환경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이슈로 각 이슈별로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율촌 입법위클리가 입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핵심 입법·정책 이슈 10선

Focus 1.	상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동향
Focus 2.	노란봉투법 시행 및 '산재와의 전쟁' 선포
Focus 3.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규제 강화
Focus 4.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Focus 5.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동향
Focus 6.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동향
Focus 7.	방위산업 성장 지원 정책
Focus 8.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정책
Focus 9.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안
Focus 10.	사법제도 개편 방향

Focus 1.

상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동향

(1) 3차 상법 개정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추진

상법 3차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이를 다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다수 계류되어 있고 각 개정안마다 자사주의 소각 이유, 기간, 조건, 예외적 허용사유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9)」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9)」 세부 내용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명확화 및 활용 제한 강화

-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주식은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여 그 법적 성격을 '자본'으로 분명히 함
-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
- 합병·분할·분할합병 등 조직재편 과정에서도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

자기주식 처분의 원칙(소각) 확립 및 보유·처분 절차 강화

-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전제로 하되, 예외적으로 회사가 매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 승인된 계획 범위 내에서만 보유·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
- 자기주식 처분 시 회사는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
- 제3자 처분은 제한적 사유에 한해 허용하되 절차 요건을 대폭 강화

상장회사 신탁취득 규제 및 처벌 규정 신설

- 상장회사의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에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
- 소각의무 위반 또는 보유·처분계획 위반 시 이사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 및 경과조치

-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
- 기존 보유 자기주식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소각

(2)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에 관한 법무부 가이드라인

1차 상법개정의 핵심 내용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그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월 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지난 12월 18일 법무부 선진법제포럼에서 최초로 그 방향성이 발표되었는데, 특히 M&A 분야, 그 중에서도 주주손해를 직접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 계열사 간 합병(포괄적 주식 교환, 분할합병 포함)과 폐쇄기업화 거래(지배주주의 주식 취득 후 상장폐지)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각 기업이 사안별로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법원 또한 본가이드라인을 상당 부분 참조하여 사안을 판단할 것이고,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경우 기업 및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추진

2025년 12월 29일,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한국ESG기준원, 관계 부처·기관(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인사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고,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주요 내용

- **이행점검 체계 도입:** 2026년부터 참여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시합니다. 또한 '주주관여활동 공개'와 '기업가치제고 관여활동 공개'가 이행점검 항목에 포함됩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2026년 상반기까지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적용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기관투자자로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이행점검의 수행 방안과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상장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점검 항목으로 '주주관여활동 공개'와 '기업가치제고 관여활동 공개'가 포함됨에 따라, 기관투자자 측이 투자대상회사에 비공개대화·서신 발송 등 주주관여활동을 확대하고, TSR/PBR/ROE 개선,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상장기업과의 소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 전면 확대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약 842개사)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자산 5천억 원 이상 기업(약 541개사)에만 적용되던 의무가 전체 상장사(약 842개사)로 확대되며, 대상 기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첫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공시 항목

- **주주:** 주주권리 보장,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편의성 등
- **이사회:**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 사외이사의 독립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등
- **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독립성, 외부감사인의 공정성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Comply or Explain'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10대 핵심원칙과 그 세부 원칙을 준수했는지 공시하되,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는 단순히 '준수 여부'를 체크하는 것을 넘어, 미준수 사유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중점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의안정보] 2214519 상법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

[바로가기](#)

[율촌 Legal Update]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2025.11.27)

[바로가기](#)

[율촌 Legal Update]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의 주요 내용과 기업 실무에 의 시사점 (2025.12.22)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추진 (2025.12.28)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 (2025.07.09)

[바로가기](#)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현황 및 시사점 (2025.12.08)

[바로가기](#)

Focus 2.

노란봉투법 시행 및 '산재와의 전쟁' 선포

(1)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2025년 노동정책 중 가장 핵심이었던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이 있는 자'로 확대하여, 원청 기업에 하청 노조 와의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쟁의의 목적 범위를 경영상 결정에 따른 고용조건 변동까지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현재의 사내 하도급 및 용역 계약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노사협력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법적 분쟁 및 쟁의행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하위 법령 및 해석지침의 향방

고용노동부는 2025년 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안에 따르면 사용자성의 핵심 징표를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제시하며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세웠으나, 노사 양측 모두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선포와 규제 강화

정부는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재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2026년도에도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관련 전 분야에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그 구체적인 방향을 살펴보면 점검·감독 대상 사업장 확대, 건설공사 도급 시 의무 강화 및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책임 신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경제적 제재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작업중지권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의무 강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입법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확충과 점검, 고용노동부의 점검 및 감독 대상 확대 의지, 유사 고위험 긴급감독 점검 확대 등 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이 실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감안하여, 감독 대응을 위한 상시적인 대비체계를 구축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브리핑]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10일 시행 (2025.09.09)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노동안전 종합대책」(2025.09.15)

[바로가기](#)

[법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1.25)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2025.12.26)

[바로가기](#)

Focus 3.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규제 강화

2025년 발생한 SK텔레콤 및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KT의 기간통신망 침해사고 등은 기존 보안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한층 강화된 규제와 책임 논의를 불러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제안의 규모와 강도로 보아 앞으로는 개인정보 리스크가 보안 실무를 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무적·사법적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SKT에 대한 과징금 및 손해배상 조정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8월 SKT의 망 분리 미흡과 관리자 계정의 평문 저장 등 기초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약 2,324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이어 11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T 해킹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SKT는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 조정안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번 과징금 및 손해배상 조정안은 향후 다른 사안에서도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서는 만약 SKT의 유출 피해자인 약 2,300만 명이 모두 조정 신청자라고 단순 가정할 경우 그 금액이 6조 9천 억 원에 이릅니다. 즉, 개인정보의 관리는 앞으로 단순한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2) 과징금 상향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DD20702)」이 2025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면을 고려할 때 본 법률안은 올 상반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 쿠팡 등을 비롯한 2025년 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요 내용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
-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과기정통부의 규제 강화

- CEO 책임 법제화: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 최종 책임자'로 명문화하여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차단
- CPO 권한 강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시행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 참여 등 실질적인 예산·인력 권한을 부여하도록 유도
- 이중 규제 리스크: 개보위의 데이터 보호 규제와 과기정통부의 망 보안 규제 동시 적용. 유출이 없더라도 침해사고 반복 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국회 의안정보] DD207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2025.08.28)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2025.11.04)

[바로가기](#)

Focus 4.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5443)」이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불법합성물)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강력한 규제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크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한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세부 개정 사항

- 불법정보 범위 추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을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 유통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손해액이 증명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의 법정손해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

본 개정안은 1월 6일 공포되었으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플랫폼 사업자, 대형 콘텐츠 제작사, 언론사 등은 향후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관리·통제 미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과징금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및 관련 부서와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본 법률안의 일부 규정에 대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미국 국무부가 미국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대내외적인 쟁점이 얹혀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22154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법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05호, 2026.1.6. 일부개정) [바로가기](#)

Focus 5.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동향

2025년 1월 공포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오는 22일 시행됩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한 후속 입법절차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9월 8일 '국가인 공지능전략위원회'의 공식 출범과 함께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9월 17일에는 안전성 확보 고시안, 사업자 책무 고시안을 비롯하여 투명성 확보·안전성 확보·고영향 인공지능 판단·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영향평가 등 총 7종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동시에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에는 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기본법 제정 후 1년 사이 관련 조직이 개편되고 AI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정책이 대폭 확장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1)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AI 산업 육성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으로 ①생산·가공 기술개발 ②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③관련 법제도 연구 및 표준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에는 정보 제공, 교육훈련, 기술 자문,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고지해야 하며, 고지 방법으로는 ①제품 설명서·계약서·이용약관 기재 ②화면·단말기 내 표시 ③게시 등이 인정됩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은 사람 또는 기계가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비가시적 워터마크 인정), 딥페이크의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비가시적 워터마크 불가). 다만 내부 업무 용도이거나 AI 기반 운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안전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는 10의 26제곱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의 인공지능시스템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술 발전 수준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이는 EU AI Act가 설정한 10의 25제곱 부동소수점 연산 기준보다 완화된 수준입니다.

고영향 AI 관련 사업자 책무

고영향 AI 해당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의 영향·중대성·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자는 AI기본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이행 근거를 5년간 문서로 보관하고, 위험관리방안·설명방안·이용자 보호방안·관리감독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타법령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예: 디지털의료제품법) AI기본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향평가에는 ①영향 대상 식별 ②기본권 유형 식별 ③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④사용 행태 ⑤평가지표 및 결과 ⑥위험 예방 및 복구방안 ⑦개선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해외사업자는 ①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②AI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③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④사고로 인한 자료 제출 요구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AI 사업자는 우선 자사의 AI 시스템이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의무 이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사전고지 방법, 결과물 표시 방법, 딥페이크 고지 방법 등을 구체화해야 하며,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 위험관리방안, 설명방안,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투명성 확보 관련 사전고지 미이행, 일정 기준 이상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AI 사업자의 준비기간 확보와 시행 초기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AI 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강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위원회의 규모는 60명 이내로 확대되고 부위원장은 3명(1명 상근)으로 증원되어 정책 추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심의·의결 사항에 정책 조정, 이행점검, 재원조달, 예산 투자 방향 등이 추가됨으로써 범정부 AI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확립되었습니다.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국가기관은 제품·서비스 구매 시 AI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에게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이 부여됩니다.

AI 창업 활성화 지원

벤처투자 모태조합을 활용한 AI 창업 지원 근거가 신설되어 정책금융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국가·지자체뿐 아니라 민간 출자도 가능하여 대규모 펀드 조성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대학·기업 등 민간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여 민간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가 AI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고품질 데이터 확보 기회가 확대되나,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이슈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22일 본법 시행과 맞추어 동시에 시행됩니다. 다만 창업 지원 및 공공분야 수요 창출 관련 조항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여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제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5.11.12) [\[바로가기\]](#)

[NIA]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안) (2025.09.17) [\[바로가기\]](#)

[국회의안정보] 22151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Focus 6.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동향

금융당국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사전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과 제로로 이어갑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 22일 이러한 기조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위 로드맵에서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무장하여 감독·검사 등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 실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할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 당면한 과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온라인·모바일 금융 플랫폼의 인터페이스의 다크패턴 요소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사 금융 상품의 설계 및 점포 운영, 상품의 안내 및 대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2025.12.22)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전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

5개 핵심 추진방향

- 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전환
- ② 소비자 자기결정권 실질적 보장
- ③ 소비자 금융후생 극대화
- ④ 금융안전망 획기적 강화
- ⑤ 금융소비자보호 DNA 무장

소비자보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예시)

- 위험 요인 분석 결과, 소비자피해 예상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수준 결정
-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판매제한

단계	판단기준	대응방안
1단계(주의)	특정 상품 판매급증 우려 언론비판 등	서면점검·검사, 자율시정 지도(경영진 면담)
2단계(경고)	금융사고, 일부 소비자피해 발생 등	현장점검·검사, MOU체결
3단계(위험)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현장검사(대규모), 판매제한 등

(2)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방안

-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강화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부적합 소비자 유형, 위험·손실가능성 등 우선 설명
-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금지
-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판단 근거·이유를 상세 기술
- 소비자 보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부여

(3)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시행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유형 마련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권 자체적으로 전산개발, 내규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범주	세부 유형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①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② 속임수 질문 ③ 잘못된 계층구조	④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⑤ 허위광고 및 기만적인 유인 행위
방해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⑥ 취소·탈퇴 등의 방해 ⑦ 숨겨진 정보	⑧ 가격비교 방해 ⑨ 클릭 피로감 유발
압박형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⑩ 계약과정 중 기습적 광고 ⑪ 반복간섭 ⑫ 감정적 언어사용	⑬ 감각조작 ⑭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편취 유도형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⑮ 순차공개 가격책정	

(4) 소액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면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장치 중 한가지로,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 현재 이러한 편면적 구속력을 규정한 2개의 법률안이 국회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안정보] 22129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바로가기](#)

[국회의안정보] 221294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5.09.23)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2025.12.22)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2025.12.26)

[바로가기](#)

Focus 7.

방위산업 성장 지원 정책

정부는 방위산업을 첨단·상생·글로벌화라는 3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재편하여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6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약 66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방위력 개선 분야 R&D 예산은 전년 대비 19.4% 증가한 5조 8,396억 원에 달합니다.

정책적으로도 공급망 보안, 사이버 방어 및 외국인 인력 통제, 공급망 보안 성숙도 기반 인증 체계(CMMC 등) 강화 등 산업권의 필요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1) 외국인·복수국적자 채용 승인제 도입

- 방산업체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기밀정보 접근 제한을 위한 '관리 계획서' 수립·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방위사업법 및 방산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2) 방산기술 유출 처벌 및 입증 구조 변화

- 기존의 '국외 사용 목적' 입증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요건 완화. 2025년 6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어 처벌 수위 대폭 상향

(3)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첨단전략기술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주권 확보

- 2026년 국방R&D 예산을 역대최대 규모인 5조 8,396억 원으로 확대하여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
- 전략 분야 집중 투자: 피지컬 AI가 탑재된 드론과 로봇 기술 개발에 2,287억 원을 투자하며, 국방반도체 분야에는 향후 5년 간 총 3,300억 원을 투입
- 미래 기술 개발 지원: 첨단항공엔진, 스텔스 기술, 재사용 우주발사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 첨단 기술의 신속한 군 도입을 위한 새로운 획득 절차 신설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국산화 기반 구축

- 공급망 관리 시스템 운영: 100대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사전에 분석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리스크에 대비
- 비축 및 선제적 개발: 경제 안보 핵심품목의 비축 범위를 확대하고, 전략 분야 부품의 국산화를 사전에 허용하는 '선제적 부품개발 트랙'을 확대 운영

방산 생태계의 중소·벤처기업 전주기 성장 지원

방산 매출 내 중소기업 비중을 현재 18%에서 2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별 지원을 시행합니다.

-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국방벤처센터를 확대하며, 중소기업 제품의 군 실증체계 마련
- 단순 참여 확대를 넘어 진입, 성장, 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을 육성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

- 인증 기반의 국내 부품Pool을 구축하고 체계기업이 해당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제도화
- 대기업의 상생 노력에 대해 원가산정 우대, 절충교역 부담 완화, 이차보전 우대금리 적용 등 실질적인 혜택 부여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통한 글로벌 수출 및 협력 강화

2030년까지 연간 수출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국가별 맞춤형 프레임워크를 강화합니다.

권역	주요 협력 및 추진 내용
북미	미국과는 MASGA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미국과 함정 건조·MRO 협력을 확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서 범정부 방산협력 TF를 운영
중동	기술이전, 공동생산, 공동개발 등 현지 협업을 통한 대형 전력증강 사업 수주 추진
유럽	현지 생산 거점 구축 및 NATO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 블록화 대응 및 시장 점유율 제고

[정책 브리핑] 2026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 확정 (2025.12.05)

[바로가기](#)

[국회의안정보] 221510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 (2024.12.03)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정부, 방위산업 대전환으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2025.12.19)

[바로가기](#)

Focus 8.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정책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구조 변화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국내 전체 NCC(나프타 분해 시설) 설비의 약 18~25%(270만~370만 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사업재편 공동행위 면책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대산 NCC 통합을 비롯하여 16개 NCC·PDH 기업 모두가 재편안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사업재편 계획 수립과 법적 기반 마련이 중점이었다면, 2026년은 지난 해 마련된 법적 기반과 사업재편 계획과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NCC (Naphtha Cracking Center): 나프타를 고온으로 분해하여 에틸렌을 생산하는 설비

* PDH (Propane De-hydrogenation):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프로필렌 생산 설비

(1) 주요 프로젝트 진행 상태

대산 산단 (업계 1호 모델)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의 자산 통합이 2026년 1월 중 정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정유와 석유화학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내 최초의 대형 통합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수 산단 (최대 감축 규모)

LG화학과 GS칼텍스 간의 NCC 통합 운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여천NCC의 일부 설비 폐쇄를 포함하여 최소 257만 톤 규모의 감축이 예상됩니다.

울산 산단 (지능형 수직계열화)

SK에너지와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3사 공동 재편안 제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른 외부 컨설팅 기반의 재편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2)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제정

2025년 12월 2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및 공동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세제·재정·고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 기업결합 심사기간: 기존 120일에서 최대 90일로 30일 단축 (30일 이내 심사하되 최대 60일 연장 가능)
- 사업재편 공동행위 예외 인정: 정보교환 및 공동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 마련
-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세제 감면, M&A 공정거래법 특례, R&D·정책자금·규제완화 등
- 한시 적용: 2028년까지 한시적 적용

[정책브리핑]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2025.12.03)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 및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2025.12.23) [바로가기](#)

Focus 9.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안

2025년 세법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납부지연가산세 체계 개편 등 기업과 투자자의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고수익 기업의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복합적인 정책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 (세부담 확충의 핵심)

- 2026년 사업연도 귀속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1%p씩 인상되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 특히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은 기존의 2억 원 이하 구간이 삭제되고 200억 원 이하 전체 구간에 20% 동일 세율 적용되어 실효세율 부담이 가중됩니다.
- 교육세율 인상: 금융·보험업 중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인상되어 대형 금융기관의 세부담이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2) 자본 및 투자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체계)

- 고배당 상장법인 분리과세: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일정 요건(배당성향 40% 이상 등)을 갖춘 고배당 기업 주주에게 14~30%의 누진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배당주 투자를 유도합니다.
- 벤처 및 리츠 특례: 벤처투자조합의 SPC를 통한 간접 투자 시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프로젝트 리츠에 현물출자 시 주식 처분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3) 글로벌 조세 대응 및 납세 환경 변화

- 내국추가세(Pillar 2) 도입: 실효세율 15% 미만인 다국적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과의 차액만큼 내국추가세를 부과하여 국내 과세권을 확보합니다.
- 징수 체계 강화: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개편하여,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의 경우,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의 0.022%를, 지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경우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의 0.67%를 적용합니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및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미제출 과태료 신설 등 세원 투명성 관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정책브리핑]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025.08.29)

[바로가기](#)

Focus 10. 사법제도 개편 방향

(1) 변호사 비밀유지권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2215392)」이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
- 를 규정
-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함

본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형사사건에서는 검찰이 법률자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의뢰인과 나눈 논의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해 민감한 소송전략의 노출 위험 없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2)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2025년 하반기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1065호)」에 따라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 폐지됩니다. 이는 지난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조치로,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원화된 체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수사기구로 편제되어 기존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 범죄, 마약 범죄, 국제 사이버 범죄가 추가된 '9대 중대범죄'를 관할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직접 수사권 없이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이러한 체제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수사범위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3) 법원 조직 개편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 논의

대법관 증원을 핵심 아젠다로 하는 법원조직 개편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지난 12월 9일부터 3일간 대법원이 개최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증원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 많으나, 세부적인 증원 규모, 시기, 단계적 증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상당기간 논의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아니라 하급 법원을 증설하거나 법관을 증원하여 하급심 적체 해소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원 재판에 대하여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법관 증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등이 2026년도에도 사법제도 개편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회의안정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5392) [바로가기](#)

[법제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 [바로가기](#)

[법제처]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입법예고 (2026.01.13) [바로가기](#)

[법제처]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26.01.12) [바로가기](#)

[YouTube]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바로가기](#)

● 입법 전략·대응팀 ●

기업의 규제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 및 입법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 전략·대응팀은 이러한 기업의 규제 및 입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지자체의 조례, 관계부처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해석과 제개정, 사안별 적용 여부 분석과 함께 개별 부처 또는 유권해석 기관 응대를 통한 규제 대응 방안, 국회 국정감사등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상시적인 입법·정책·규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별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전문 입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 전략·대응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 및 입법 대응 전문팀으로, 풍부한 네트워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변호사

02-528-5219

dskim@yulchon.com

이강민 변호사

02-528-5127

kmlee@yulchon.com

서경희 변호사

02-528-5324

khsuh@yulchon.com

박지웅 변호사

02-528-5190

jwpark@yulchon.com

문성 변호사

02-528-5393

smun@yulchon.com

양재선 외국변호사

02-528-5192

jsyang@yulchon.com

박준모 외국변호사

02-528-5773

parkjm@yulchon.com

장재형 세무사

02-528-5392

jhjang@yulchon.com

구기성 고문

02-528-5168

kskoo@yulchon.com

오용석 고문

02-528-6436

yongsukoh@yulchon.com

최용선 수석 전문위원

02-528-5100

yongsunchoi@yulchon.com

김동석 수석 전문위원

02-528-5824

dongsukkim@yulchon.com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

02-528-5806

junyoungchoi@yulchon.com

윤여훈 전문위원

02-528-5271

summeryoon@yulchon.com

김한규 전문위원

02-528-6124

hgkim@yulchon.com

정한욱 전문위원

02-528-6116

hwjung@yulchon.com